# 한우 당대검정사료 구입 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에 있어 경기도축산진흥센터를 "발주기관"라 하고 계약의 상대방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한우 당대검정 사료 구입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한우 당대검정사료(이하 "사료"로 통칭한다.)의 구매에 있어 "발주기관"의 납품 요구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사료를 납품함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기간)

- ① 본 사료 공급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업체선정 지연 등 2개월 내 새로운 계약이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최대 2개월) 할 수 있다. (※ 지체 시, 센터 내 종축 사양관리 및 경기도자체씨수소 생산에 지대한 문제 발생)

제3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사료 1kg당 금액(1포/25kg 기준 금액으로 대체 할 수 있다.)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제세와 공과금 등(운반비, 상하차비 등)을 포함한다.

### 제4조(품질)

- ① 본 사료는 가축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8호)의 한우사양 관리기준에 표시된 농후사료 배합 및 영양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 ② 보관 및 운반으로 인한 품질 이상 사료는 납품하여서는 안 되며, 이상 확인 시 즉시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 제5조(납품 및 검수)

- ①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사료의 소요일 3일 전까지 수량을 기재한 문서 또는 구두(전화)로 납품을 요구한다.
- ②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물량을 "계약상대자"는 지정품목 및 수량을 지정일자, 지정시간,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당해공무원의 검수를 받는다.

제6조(수량증감) "발주기관"은 개체별 사료요구량 등 해당 검정기간 중 종축 관리의 상황변화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따라 수량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대가지급)

- ① 사료의 대금은 "발주기관"이 주문 해당 월 말까지 인수한 물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익월초 단가계약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온라인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청구금액의 1.5% 상당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1.5%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③ 기타 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에 의한다.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고 계약단가보다 기준가격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증감비율에 따라 할증하거나 할인하여 납품한다.

※ 기준기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계약상대자"의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한다.

#### 제9조(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일까지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미 납품 대가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발주기관"이 미리 승인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전항의 지체상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 납부 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불 할 대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준수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지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발주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항』에 따른 등록된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으로 물품을 납품 해야 하고,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해 (거점)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사료의 가격, 품질(제4조 1항)과 수량을 부당하게 납품할 경우

- 3. "발주기관의 요청에도 공급이 없거나 요청이 없음에도 공급할 경우
- 4.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간의 사전 협의 없이 단가를 임의 청구하는 경우
-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종축 사양 관리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6. 기타 계약사항을 수행 함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1조에 의한 계약해제로 발생 되는 손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공급한 사료에 기인한 "발주기관"의 종축 사양 관리의 피해는 피해조사를 의뢰한 결과에 의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대금이 있을 때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이 조건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또는 조항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한우검정기준」을 준용한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